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보고방법	보고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주 화요일
2) 그 밖의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월 15일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매월 15일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주 화요일
2) 그 밖의 석유제품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매월 15일
나. 수출입상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0호서식	매월 15일
다.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2호서식	매주 화요일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1) 휘발유·경유 또는 등유	한국석유관리원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별지 제43호서식	매주 화요일
2) 그 밖의 석유제품	수탁법인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별지 제43호서식	매월 15일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한국석유관리 원	보고 전산보고·전자보 고 또는 서면보고	식 별지 식	제44호서	매주 화요 일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 자 :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 소용)	수탁법인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식	제45호서	매월 15일
라.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 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 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한국석유관리 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식	제47호서	매주 화요 일
마.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 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 구청장				석유판매업 자의 보고 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바. 다목에 따른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 구청장 및 공 사				석유판매업 자의 보고 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사.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 매업자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 입상황 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 서식		매월 15일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한국석유관리 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제42호서 식		매주 화요 일
아.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제46호서 식		매월 15일
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자: 수급상황기록부·수출입상 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 서식		매월 15일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 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 반대리점용)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제43호서 식		매월 15일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 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 유소용)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제44호서 식		매월 15일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별지 제45호서		매월 15일

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보고	식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황기록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식	제48호서	매월 15일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송 현황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식	제49호서	매월 15일
8. 그 밖의 보고사항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원가·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나. 석유소비자					
1) 용제소비자: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서식	제47호의2	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2) 용제 외의 석유소비자: 석유 소비상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보고를 명하는 서면에서 정한 날짜까지
다. 법 제7조·제9조제4항·제10조제5항·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석유관리원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별지 식	제51호서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	공사	전자보고 또는 서면 보고			매월 마지막 주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비고

1. "전산보고"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것으로, 전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3. "서면보고"란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 ~~4.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집계를 통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